의 안 번 호	제96호
의결연월일	2023. 3. 16.

-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3. 3. 예산군수

❍ 회 부 일 자 : 2023. 3. 7. 행정복지위원회

❍ 상 정 일 자 : 2023. 3. 16.
제28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임호빈)

가. 제안이유

❍ 인구감소지역 지정,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 확대

❍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청년의 군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조정(안 제2조제1호)

- (변경전) 18세 이상 39세 이하
- (변경후) 18세 이상 45세 이하

○ 청년의 기준 명확화(안 제2조제1호)

- (변경전) 예산군에 거주·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
- (변경후) 예산군에 거주·생활하는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한진훈)

○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청년정책의 수혜 범위 확대와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청년의 군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없　　음

5. 토 론 요 지

○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　음